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관계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하며, 주사무소 이전 및 대폐차 기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화물운송업 전부 양도와 동일하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제9조제1항제3호)

나.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화물의 고정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위한 기준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제21조의7 및 별표 1의 3)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시 관련 절차 신설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22조의3)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6개월로 완화(제52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자의”를 “자 2분의 1 이상의”로 한다.

제21조의7제1호 중 “운송할 것”을 “운송하여야 하며, 운행 중 적재함 내부의 적재화물이 한 방향으로 편중되어 화물자동차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적재화물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행할 것(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위반사실 확인서

일련번호	-
적발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적발 장소	적발위치 검문소명
운전자 정보	성명 주소(거주지) 주소(등기우편수령지)
차량 정보	차종 (차량)등록번호 적재화물종류

상기 본인은 상기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준수사항	근거 규정	위반여부(○ 표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이행	제11조제20항/제12조제8호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조작	제11조제23항/제12조제9호	
금지		

위반 내용
(상세기술)

20 년 월 일

운전자 본인은 상기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우편 등기수령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등기우편수령지로 우편발송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합니다.

성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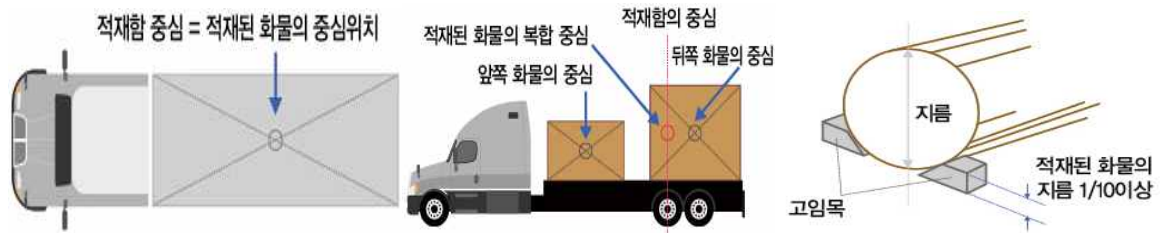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적 발 기 관 명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제2호 관련)

덮개 · 포장 및 고정방법
1.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 · 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각 목의 화물과 생김새나 모양이 비슷한 화물을 포함한다)로서 덮개 · 포장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덮개 또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코일 라. 대형 식재용 나무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바. 콘크리트 말뚝(concrete pile) 사. 강관(steel pipe), 철제 빔(beam) 아. 컨테이너(container) 2. 차량의 주행(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해야 하며,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편중 또는 집중하중되지 않도록 중량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게 중심이 아래와 같이 적재부 중심점에 가깝게 적재하여야 한다. 또한, 원형단면 화물 및 적재함 전후좌우 공간 발생 화물의 경우에는 고임목 또는 받침목을 사용하여 한다.



3. 제1호의 단서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적재방법 이상으로 충분히 결박 및 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하중 분배를 고려해 기계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기(차륜만 해당한다)·로더·지게차의 경우에는 최소 4개의 와이어 로프(10mm 이상) 또는 체인(10mm 이상) 및 레버블럭을 사용하여 적재부에 결속하여야 한다.

또한, 차륜은 주차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장치는 별도로 적재하여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송 중에 이탈하지 않도록 3개 이상 바퀴를 쇠막대형 고임목(적재부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높이는 바퀴 지름의 1/10이상 일 것) 또는 고정끈, 고정흙 등 충분한 성능을 가진 도구를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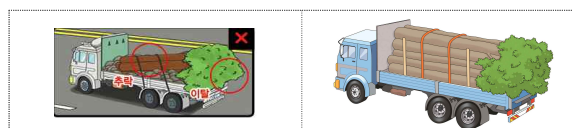
다만, 적재부 상단의 맨 앞 첫 번째 상품차와 3번째 상품차, 그리고 적재부 하단의 맨 뒤쪽 상품차는 최소 2개 이상의 바퀴를 고정끈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다. 코일: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적재부와 탈부착이 가능한 전용틀에 적재하여 운송하거나 아래의 장구류를 사용한 고정기준에 따라 결박 및 고정하여야 한다.

장구류	적재기준
	- 받침목 2개(높이는 최소 120mm 이상일 것) - 오각목 지지용 강철 철재틀 2개 이상
	- 7톤 이상의 코일은 레버블록과 체인(2.5ton 규격, 선경 10mm 이상)으로 최소 4점(2줄)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7톤 이하의 코일을 3개 이상 적재하는 경우 적재부 맨 앞과 끝단의 코일은 최소 4점(2줄)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체인의 각도는 바닥면과 60도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체인과 코일의 접합부는 보호대를 사용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체인사슬] - 규격(선경): 10.0mm 이상(코일 무게 5톤 이상) - 후크 및 체인 마모, 길이 변화가 없는 제품
	[레버블럭] - 최소규격: 2.5ton 이상(코일 무게 5톤 이상) - 후크 단면 지름 감소가 기존 대비 5% 이내, 개구부의 간격 변화가 기존 대비 5%이내, 체인 전장의 길이 변화가 기존 대비 5% 이내인 것을 사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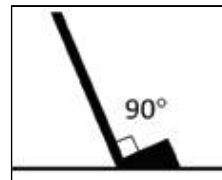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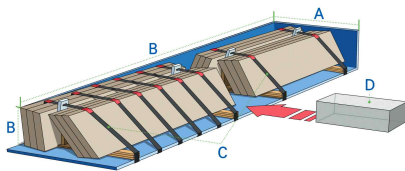
라. 대형 식재용 나무

- 적재된 화물은 차량의 길이와 너비, 폭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기준(차량 길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 후 50cm×30cm 이상의 빨간 형검으로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할 것)
- 화물의 하중을 고려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적재할 것
- 화물자동차 좌우측면 2곳 이상 부분을 아래의 벨트 또는 고무 밧줄로 결속할 것.



	[벨트] - 규격: 75mm 이상 - 봉제선 및 표면 마모나 절손이 없는 제품으로서 섬유 로프 두께의 3분의1 이내의 마모,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폭보다 좁은 경우
---	--

마. 유리판, 콘크리트 벽 등 대형 평면 화물: 화물은 고정틀(마주보는 면 사이의 간격이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 아래 그림과 같이 바닥면과 경사면이 직각인 형태)을 활용해 적재하고,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평면 화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최소 2개 이상의 고정끈으로 고정해야 하며, 앞·뒤로 나누어 적재한 경우에는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중앙에 받침대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 ① 차량길이, 높이, 폭을 초과하지 않게 적재할 것
- ② 중앙의 고정틀(마주보는 면의 간격이 위는 좁고 아래쪽은 넓은 형태) 활용, 밀착 적재
- ③ 벨트 또는 로프 등으로 고정
- ④ 앞·뒤 양분하여 적재 시 중앙 받침대 설치

바. 콘크리트 말뚝(concrete pile): 다음의 장구류를 사용한 적재기준에 따라 결속 및 고정하여야 한다.

장구류	적재기준
	- 직경 50센티미터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때에는 다른 크기의 제품을 추가로 적재할 수 없으며, 적재부 좌우측면에 구름저지용 지지대를 사용하여 적재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한 후 적재부 하단 받침목에 2줄 이상 다음의 고정끈(체인사슬)과 레버블럭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체인사슬] - 규격(선경): 10.0mm이상 / 후크 및 체인의 마모, 길이 변화가 없는 제품일 것
	[레버블럭] - 규격 2.5ton 이상 / 후크 단면 지름 감소가 기존 대비 5% 이내, 개구부의 간격 변화가 기존 대비 5%이내, 체인 전장의 길이 변화가 기존 대비 5% 이내인 것을 사용할 것

사. 강관(steel pipe), 철제 빔(beam): 다음의 장구류를 사용한 적재기준에 따라 결속 및 고정하여야 한다.

장구류	적재기준
	- 높이(세로) 70센티미터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때에는 다른 크기의 제품을 추가로 적재할 수 없으며, 적재부가 평판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적재부 좌우측에 이탈방지용 지지대를 사용하여 적재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적재 후 2줄 이상 아래 기준의 고정끈(체인사슬 또는 슬링벨트)과 레버블럭으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체인사슬] - 규격(선경) 10.0mm이상 / 후크 및 체인의 마모, 길이 변화가 없는 제품일 것.
	[벨트] - 규격 75mm 이상 / 봉제선 및 표면 마모나 절손이 없는 제품으로서 섬유 로프 두께의 3분의1 이내의 마모, 봉제선의 풀어진 길이가 폭보다 좁은 경우
	[레버블럭] - 규격 2.5ton 이상 / 후크 단면 지름 감소가 기존 대비 5% 이내, 개구부의 간격 변화가 기존 대비 5%이내, 체인 전장의 길이 변화가 기존 대비 5% 이내인 것을 사용할 것.

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하단 각 모서리(4곳) 부분을 반드시 잠금장치로 고정하여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경우에도 각 컨테이너별로 고정장치로 고정할 것.(단, 1개의 컨테이너 크기가 40ft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적재부 잠금장치 위치와 컨테이너 각 모서리의 잠금장치가 상호 불일치하여 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적재부 잠금장치 위치에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고정하여 운행할 것.)



- 컨테이너 하단 각 모서리 반드시 고정할 것.
- 컨테이너를 2개 이상 적재할 경우 각각 네면 고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변경허가) ①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 ①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u>자의</u>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 ----- ----- <u>자 2</u> <u>분의 1 이상의</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 어느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 ----- -----

하나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 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말한다)을 설치하고 운송할 것

2. (생략)

<신설>

-----.

1. -----

----- 운송하여야 하며, 운행 중 적재함 내부의 적재 화물이 한 방향으로 편중되어 화물자동차가 쓰러지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적재화물 고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행할 것(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기한·절차·범위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기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3개월</u>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 5. (생략) ②·③ (생략)	<u>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u>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u>6개월</u> ----- -----.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